<붙임3>

퇴사자 이직사유 확인서

※ 본 확인서는 퇴사자의 **퇴직 관련 서류 파기** 등 퇴사자의 이직 당시 상황을 **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업장**의 경우에만 제출하며, 본 확인서를 **거짓으로 작성**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**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행위**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사업장 정보

사업장명	대표자	사업장 소재지	연락처

2. 퇴사자 정보

성명	사업장 근로기간
	년 월 일 ~ 년 월 일
	년 월 일 ~ 년 월 일
⋮	

3. 입증자료 미제출 사유?(해당사항에 √표시)

□ 미보유 □ 일정 기간 보유 후 자료파기 □ 기타 사유( )

4. 퇴사자 이직확인서 신고시 경영상 필요 등에 의한 권고사직·해고(23번)로 신고한 이유?(구조조정, 희망/명예퇴직, 직제 개편, 취업규칙 근거규정 등 **구체적으로** 작성 요망)

5. 4번 사항 확인 결과 실제 퇴사 사유가 23번이 아닌 경우, 실제 퇴사 사유?(해당 경우에만 작성하며 정년으로 인한 퇴직, 본인 사업을 위한 자진퇴사 등 **구체적으로** 작성 요망)

5-2. (5번 사항 해당시에만 작성)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게 23번으로 신고한 이유?(담당자 착오, 퇴직자 요청 등 **구체적으로** 작성 요망)

년 월 일

본인은 상기 퇴사자의 이직사유에 대해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확인자: (서명)

대 표 자 : (직 인)